KOSHA GUIDE

C - 109 - 2017

- ② 사용 전 연결관 등의 부품 열화 및 호스의 변형, 파열, 비틀림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③ 사용 시 공기통의 공기 잔량을 확인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 (다) 호흡용 보호구 외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도록 한다.
- (라) 작업 입회자는 밀폐공간 출입 시 입회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11) 그 외의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X-68-2015(밀폐 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6.3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

근로자가 작업 수행중 감전 위험이 높고,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 (1) 정전범위, 정전순서, 정전 확인순서, 전원 재투입 순서 및 개폐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작업 착수 전에 기기 등의 동력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동력 통제를 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안전작업허가서에 차단하여야 할 기기 번호, 기기명, 담당자 등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4) 차단해야 할 기기의 전원개폐기(현장 스위치)는 기기 담당 운전원(현장 운전원)이 직접 차단하여야 한다.
- (5) 현장 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 스위치, 기기 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 담당자가 직접 차단하여야 한다.